

#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An Analysis of Archives Included ‘Account Document’ at  
Imsil County(任實縣) in Jeolla Provinces in the Late Joseon Period

남 권 희 (Nam, Kwon-hee)\*\*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3 부임시기별 任實縣監 기록               |
| 2. 任實縣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 | 4. 『任實縣重記冊』의 서책과 종이<br>관련 항목 분석 |
| 2.1 역사와 지리         | 4.1 書冊                          |
| 2.2 임실현의 주요 시설     | 4.2 文書                          |
| 2.3 임실현의 시설물 관련 題詠 | 4.3 製紙와 寺刹                      |
| 3. 『任實縣重記冊』의 書誌    | 5. 맺음말                          |
| 3.1 『任實縣重記冊』의 형태   | <참고문헌>                          |
| 3.2 重記의 구성과 내용     |                                 |

## < 초 록 >

이 연구는 1840년 전라도 임실현에서 작성된 『任實縣重記冊』에 대하여 작성 시기를 비롯한 서지사항 그리고 형식과 기술된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특히 서책, 제지, 사찰과 관련된 항목 중심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실현중기책』의 작성시기와 당시 재임했던 현감은 표지의 목서 기록인 “道光二十年正月”과 『任實邑先生案』을 통해서 1839년 12월에 鄭基徹이 임실현감으로 부임한 뒤 1840년(道光 20) 1월에 『임실현중기책』이 작성된 것이다.

둘째, 『임실현중기책』은 전체적으로 그 기술체제와 내용은 큰 항목으로 房 또는 色을 두고, 하위 항목에 [某姓]等內備上을 두어 현감 별로 관리했던 물품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항목의 기술은 다시 세구분 한 뒤 상태·수량·분실 사유 등이 기술되어 있다.

셋째, 『임실현중기책』은 다른 물품에 비해 서책과 戶口帳籍에 대한 기록의 비중이 높았다. 鄕校와 官衙에 비치된 서책을 내용별로 분류해 본 결과 향교에는 유교 경전류·역사서·교훈서 등의 서적이 비치되어 있었고, 관아에는 법전과 형률서 그리고 법의학서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넷째, 『임실현중기책』의 紙所色 항목과 『임실읍지』의 公所 항목 그리고 사료와 문헌 기록을 통하여 임실의 사찰과 제지업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1800년대를 전후하여 사찰제지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要語: 任實, 『任實縣重記冊』, 『任實邑先生案』, 『任實邑誌』, 書冊, 寺刹製紙業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접수일: 2014년 3월 1일 최초심사일: 2014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3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gives a bibliographical contemplation on *Imsilhyeonjunggichaek* which was completed at Imsil-Hyeon, Jeolla Province in 1840.

Out of the related items displayed at Imsil-Hyeon, materials from books, paper, and items from buddhist temples have been analyz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book. In addition to that, the research on features of the contents and descriptive system reveals the following facts.

First, through thorough understandings of written time period of *Imsilhyeonjunggichaek* and records of then governor of Imsilhyeon (administrative district of Chosun dynasty), the time period of the publication turned out to be January, 1840 (20th year of Chinese Dogwang Period), right after Imsil-Hyeon Governor, Jung Gi-Cheol was newly appointed in December, 1839.

Second, The book provides a generally detailed system of its description and sophisticated contents. By putting sub-categories under a bigger category, it allows reader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by respective governors clearly.

Third, *Imsilhyeonjunggichaek* contains higher percentage of publications and 'Hoggujangjeok(records of family register)' compared to other items.

Fourth, through the analysis of Jisosaek items in *Imsilhyunjunggichaek*, *Imsilupji*, historical materials, and bibliographic records, an interconnectedness between buddhist temples in Imsil-Hyeon area and paper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found, which as a result, revealing declines of paper industry of buddhist temple by 1800's.

Key words: Imsil, *Imsilhyunjunggichaek*, *Imsilupsungsengan*, *Imsilupji*,  
Old books, Paper manufacturing of temple

## 1. 머리말

이 연구는 ‘重記’라는 조선시대 관아의 물품 관리 기록물 가운데 全羅道 任實縣에서 작성된 『任實縣重記冊』 필사본 1책에 대하여 해당시기의 현감을 조사하고 중기에 수록된 내용과 기술방법 등을 분석해 본 것이다.

중기는 『朝鮮王朝實錄』에 그 의미와 용도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는 일반적으로 물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과 대조를 위해 일정 시기마다 작성되었고,<sup>1)</sup>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자의 무고함을 증명하거나 어떤 사실의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sup>2)</sup> 또한 중기를 위조하거나 감추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랐다.<sup>3)</sup>

일반적으로 고문서의 개념 정의로 볼 때 중기는 ‘각 관청마다 보유한 물품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마다 상급기관(觀察使, 戶曹나 兵曹)에 보고를 하며, 관리 교체시기에 解由를 위한 引受引繼의 기초가 되는 문서’<sup>4)</sup>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실의 중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지만 전라도 지역의 중기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光州牧重記를 다룬 해제<sup>5)</sup>와 전라도 羅州牧의 軍備실태<sup>6)</sup> 연구가 있다. 한편 단행본으로 2009년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 펴낸 『重記 I』, 『重記 II』가 있는데, 이는 중기 자료를 정리하고 그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그밖에도 朝鮮朝의 官廳會計 연구<sup>7)</sup>와 重記資料 分析에 의한 조선시대 지방관아의 기록관리<sup>8)</sup>의 연구, 그리고 고문서 용어 풀이 - 重記 연구<sup>9)</sup>가 있다. 이상 중기

1) 『朝鮮王朝實錄』 世宗2年 1月 庚戌(條).

2) 『朝鮮王朝實錄』 光海君1年 5月 丁亥(條).

3) 『朝鮮王朝實錄』 肅宗44年 5月 辛酉(條).

4) 南權熙, “慶尙道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 分析,” 『嶺南學』 第21號(2012. 6), 209.

5) 金德珍, “『光州牧重記』 解題,” 『湖南文化研究』 第21輯(1992).

6) 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 牧의 軍備 實態,” 『東國史學』 第46輯(2009).

7) 朴源澤, “朝鮮朝의 官廳會計 - 重記와 解由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7).

8) 南權熙, “重記資料 分析에 의한 朝鮮時代 地方 官衙의 記錄管理,” 『社會科學』 14(2002).

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볼 때 아직까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존하는 중기자료는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며, 전라도 소재의 ‘重記’는 18종<sup>10)</sup>이 있지만 이 가운데 연구·분석된 자료는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서 지역간의 중기 기술체제 방법 그리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기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의미에서 전라도 지방관아 중 임실 현에서 작성된 『任實縣重記冊』의 분석을 통해 먼저 간행시기를 비롯한 서지사항, 체제, 내용을 파악하고, 중기에 기록된 물품 중 書冊, 文書, 製紙 그리고 寺刹과 관련된 항목을 중점으로 임실 관아의 물품관리와 전반적인 통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체계화 되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9) 金赫, “古文書用語 풀이 - 重記,” 『古文書研究』 19(2001), 157.

10) 이 표는 영남문화연구원 편, 『重記 I: 監營, 群英, 軍鎮, 左道 I』,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46-50과 김덕진, “『光州牧重記』 解題,” 『湖南文化研究』 제21집(1992), 181과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종합하였다.

	重記名	作成機關	作成年度	所藏處		重記名	作成機關	作成年度	所藏處
1	羅州牧重記	羅州牧	1693년	개인소장	11	全羅道重記 (6冊) 湖南紙筒重記 湖南巡檢穀重記 湖南固山城軍器重記 威鳳山城軍器重記 南關鎮軍器重記 湖南山城會外重記	全羅監營	1887년	규장각
2	務安縣重記	務安縣	1726년	개인소장					
3	順天重記	順天府	1850년	국립중앙도서관					
4	同福縣各庫物種重記	同福縣	1860년	장서각	12	長水縣重記	長水縣	1888년	국립중앙도서관
5	光陽縣各房都重記	光陽縣	1869년	규장각	13	光州牧重記	光州牧	1889년	장서각
6	高山縣都重記	高山縣	1880년	장서각	14	順天郡各掌重記	順天郡	1898년	규장각
7	全羅左水營所在錢穀布木重記 蓄積磨勘成冊	全羅左水營	1883년	규장각	15	順天府各掌重記	順天府	1890년	국립중앙도서관
8	全羅左水營重記 蓄積磨勘成冊	全羅左水營	1886년	규장각	16	府下記冊	全羅南道	1903 - 1904년	장서각
9	靑巖道重記成冊	靑巖驛	1886년	규장각	17	全羅南道觀察府重記成冊	全羅南道	1904년	장서각
10	完營各庫重記	全羅監營	1887년	규장각	18	紙物下記冊	淳昌郡	1905년	규장각

## 2. 任實縣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

현재 任實郡은 전라북도의 동남쪽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데 1읍과 11面<sup>11)</sup>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의 대부분은 섬진강 상류의 산간 지역이고, 북동쪽으로 진안군, 남동쪽으로 남원시, 남쪽으로 순창군, 북서쪽으로 완주군과 접해있다. 자연 환경으로 볼 때 노령산맥이 군을 지나고 있어 산지가 많은 편이고, 일부 지역에는 분지가 자리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임실현중기책』의 책명에 보이는 ‘任實縣’은 전라북도 임실군의 옛 행정구역으로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9권, 『任實邑誌』<sup>12)</sup> 등의 사료를 통하여 임실현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 2.1 역사와 지리

임실현은 삼한시대에 馬韓에 속하여 靑雄縣이라 칭하였고, 삼국시대에 임실현이라 개칭되었는데 雲水縣이라 부르기도 하였다.<sup>13)</sup>

본래 백제시대에 임실군으로 부르던 것이 신라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고,<sup>14)</sup> 통일신라시대에는 南原府에 속하고 역시 任實郡이라 하였다. 고려 때는 全羅道

---

11) 1읍 11面: 任實邑. 靑雄面, 雲岩面, 新平面, 聖壽面, 葵樹面, 新德面, 三溪面, 館村面, 江津面, 德峙面, 只沙面.

12) 『任實邑誌』, 筆寫本, 불분권 2冊(각 42張, 28張), 개인 소장본.

『임실읍지』의 ‘官案’의 항목을 보면 임실현감 명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李山輔가 재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임실읍선생안』의 현감명단에서 재임시기를 파악해보니 이산보는 1734년부터 1737년까지 재임했으므로 『임실읍지』는 1737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 추정된다. 형태는 선장본 5침안이며, 크기는 38×24cm이다. 내용구성은 土產, 館宇, 樓亭, 學校, 書院, 橋梁, 場市, 佛宇, 右跡, 冢墓, 官案 등 1책과 李奎報, 金克己, 徐居正, 白光勳 등의 인물들이 임실현의 역원과 산천을 거닐며 남긴 시문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13)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9卷 任實縣. “郡名 雲水.”

14) 『三國史記』 卷37 『地理誌』. “任實郡本百濟郡景德王改州郡名及令並因之領縣二馬靈縣本百濟馬突縣景德王改名令因之靑雄縣本百濟居斯勿縣景德王改名令巨寧縣.”

全州牧 밑에 任實郡을 두었고, 남원부의 屬郡이 되었다가 1172년(明宗 2)에 監務가 改設되었으며,<sup>15)</sup> 조선에 들어와 1413년(太宗 13)에 임실현으로 개편이 되었다. 이때 郡례에 따라 令6품의 縣監과 訓導를 각 1명씩 改設했는데,<sup>16)</sup> 임실현감은 南原鎭管 소속으로 節制都尉 직책을 겸임하게 되었다.<sup>17)</sup>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임실현으로 불려졌다가 1896년에 全南南道와 全南北道로 개편<sup>18)</sup> 이후 면의 통폐합에 의해서 조정되어 지금의 임실군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실의 읍지인 『雲水誌』<sup>19)</sup>에 기록된 임실현의 지리적 요건을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高德山과 聖壽山이 있고, 서쪽으로는 雲巖江과 葛潭江이 둘러있으며 땅의 넓이는 100여리이고 方面 수는 18개며, 防備가 굳건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sup>20)</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임실현의 위치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동으로 南原府 境界까지 21리, 남으로 南原府 境界까지 23리, 서쪽으로 淳昌郡 境界까지 57리, 泰仁縣 境界까지 65리, 북으로 全州府 境界까지 24리, 鎭安縣 境界까지 25리, 서울로부터는 582리”<sup>21)</sup> 라는 각 지역간의 거리가 나타나 있다.

임실현의 산천으로는 聖壽山, 龍繞山, 高達山, 斗滿山, 回文山, 靈鷲山 등과 斗滿川, 九阜川, 烏原川이 있다. 이중 성수산은 王氣를 품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上耳庵事蹟記』<sup>22)</sup>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 太祖 王建이 열지어 벌려있는

15) 『高麗史』 卷57 『地理誌』. “任實郡本百濟任實郡新羅因之至高麗來屬明宗二年置監務.”

16)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9卷 全羅道 任實縣. “建置沿革 本百濟任實郡 新羅因之高麗屬 南原府 明宗二年 置監務 本朝 太宗十三年例爲縣監.”

17)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역사문화전 X 『임실』 (서울: 비에이디자인, 2011), 170.

18) 이때 全南北道는 治所를 전주에 두고 26개 군을 거느렸는데 26개 군을 다시 4등급으로 나누었고, 임실은 礪山·錦山·益山·臨陂·金溝·咸悅·扶安·茂朱·淳昌과 더불어 3급 군에 속하였다.

19) 『雲水誌』, 木活字本, 2卷 1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0) 『雲水誌』. “以其東則控高德聖壽山之尖秀 以其西則帶雲巖葛潭江之泓澄 幅員之廣百餘里 坊面之多十有八 關防之壯 物產之豐 眞天府之地也.”

21)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9卷 任實縣. “東至南原府界二十一里 南至同府界二十三里 西至淳昌郡界五十七里 至泰仁縣界六十五里 北至全州府界二十四里 至鎭安縣界二十五里 距京都五百八十二里.”

22) 『上耳庵事蹟記』: 1983년 上耳庵 창건 경위를 적은 事蹟記이다. 상이암은 임실군 성수면

산의 형상을 보고 八公山이라 불렀다고 하며,<sup>23)</sup> 조선 태조 이성계는 歡喜潭에서 3일 동안 같이 목욕하던 승려가 부처였음을 깨닫고 돌에 ‘三清洞’을 새겼다고 한다.<sup>24)</sup> 또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편에서는 “임실에서 구례까지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름난 곳과 훌륭한 경치가 많고, 큰 마을이 많다.”<sup>25)</sup> 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각종 사료에 나타난 임실현의 자연환경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기름진 땅, 마을 사이를 흐르는 섬진강 물줄기 등 풍수 지리적으로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2.2 임실현의 주요 시설

### 2.2.1 鄉校

1737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임실읍지』<sup>26)</sup>에는 ‘學校’의 항목에 향교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실향교는 縣의 북쪽 1리에 위치하며, 이 당시 大成殿<sup>27)</sup>에는 五聖인 孔子 · 顏子 · 曾子 · 子思 · 孟子와 宋朝四賢인 周敦頤 · 程頤 · 程顥 · 朱熹 그리고 우리나라 성현인 薛聰 · 崔致遠 · 安裕 · 鄭夢周 · 鄭汝昌 · 金宏弼 · 趙光祖 · 李彥迪 ·

---

성수산에 있는 庵子이며, 875년에 道禪國師가 창건하였고, 1394년 覺如가 중수하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불탄 것을 1909년 大圓이 중건하였다. 6·25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58년 재건되었다.

23) 『上耳庵事蹟記』. “又按古蹟此山則名曰八公山此庵則號曰道詵庵.”

24) 『上耳庵事蹟記』. “此山有一僧名曰覺如也 深行禪定性達心空隔山嶂而能見食烹魚而還生 此是無學之弟子也 無學告於太祖曰(中略)詣[壇]相見於是三日沐浴于歡喜潭 每日有一沙彌同浴同樂 三日後乃覓其僧而不得見 問諸寺僧對曰 寺無其僧也 太祖心知其神人相助乃曰 吾浴此潭三清陋身矣 由是親接乎佛也 而其僧即佛也 不可以無心致之 因大刻於石面即三清洞三字也.”

25)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 “自任實至求禮沿江上下多名區勝槩又多大村塢.”

26) 주 12) 참고.

27) 현재 임실향교 대성전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다.

李滉·成渾·李珥·金長生の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또 향교 내 건물로는 神門 1間, 東西挾門 各1間, 祭器庫 3間, 典祀廳 4間, 東齋 5間, 西齋 4間, 明倫堂 3架3間이 있으며, 大門 1間 左右夾門 各1間, 庫舍 2間, 典穀房 1間, 廚屋 1間이 있다.

## 2.2.2 書院

書院은 우리나라의 선현을 배향하고 유생들을 가르치던 조선의 대표적인 사학 교육기관으로 국립 교육기관인 향교를 넘어서는 고급 교육기관이자 향촌 사회의 이념적 구심점이었다. 임실현에도 11곳의 서원<sup>28)</sup>이 있었고, 그중 寧川書院<sup>29)</sup>은 사액서원으로 현판과 노비 등을 하사받아 교육의 자치를 영위하고 있었다. 11곳의 서원 중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철거된 서원으로는 龍臺書院, 阿溪書院, 中洲書院이 있고, 서원이 철거되었다가 후손들에 의해 복구된 서원은 玄洲書院, 館谷書院, 德巖書院, 新安書院, 鶴亭書院이 있다. 이 가운데 『임실읍지』의 書院 항목에 학정서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鶴亭書院은 두 번 옮겨졌는데 庚子年(1660)에 鳴鶴亭 서쪽으로 100보 되는 곳에 세워졌고, 13년 후 癸丑年(1673)에 임실 큰 마을의 북쪽에 있는 [ ]에 옮겨 세우고 극념당 金千鑑, 인덕정 朴蕃, 수심재 朴薰, 경계 洪鵬, 운암 李興勃, 운학 趙平 등 六賢을 奉安하고 있다.<sup>30)</sup>

학정서원은 본래 1608년(宣祖 41)에 창건<sup>31)</sup>했다가 1621년(光海 13) 酒泉洞으

28) 『任實邑誌』 書院. “八賢書院, 龍臺書院, 阿溪書院, 玄洲書院, 館谷書院, 寧川書院, 舟巖書院, 德巖書院, 新安書院, 鶴亭書院, 中洲書院.”

29) 1686년(肅宗 12)에 ‘寧川’이라는 임금의 친필 현판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었고, 당시 남원부 48방 중의 只沙坊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임실군으로 편입되었다. 1984년에 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20호로 지정되었다.

30) 『任實邑誌』, 書院 第9張.

31) 金千鑑, 『健齋集』 附錄 卷3 『年譜』, 『韓國文集叢刊』 47. “四十一年 戊申(1608) 任實人士 建院縣南二十里鶴亭.”

로 옮겨졌는데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후 1656년(孝宗 7)에 鳴鶴亭으로 옮겨 새로 창건되었고, 흥성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1868년(高宗 5) 9월에 훼손되었다가 1994년에 서원을 복원하고 매년 3월 3일 향사를 지내고 있다.

### 2.2.3 寺刹

임실현의 寺刹은 烏院寺, 加智寺, 上耳菴, 石門菴, 深源菴, 仙狎寺, 西耳菴, 佛饗臺菴, 山灘菴, 水會菴, 鳳臺菴, 中基寺, 葛公寺, 水落菴, 望月菴, 日出菴 등이 있다. 『임실읍지』 기록을 보면 당시 縣의 동쪽으로는 加智寺, 서쪽으로는 西耳菴, 鳳臺菴, 中基寺, 葛公寺, 水落菴, 북쪽으로는 烏院寺가 있으며, 성수산에는 上耳菴, 石門菴, 深源菴, 백련산에는 仙狎寺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가지사, 심원암, 선암사, 서이암, 산탄암, 수락암은 『임실현증기책』의 ‘紙所色’ 항목에서 製紙와 관련하여 언급된 사찰들로 그 현황과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2.3 임실현의 시설물 관련 題詠

불분권 2책인 필사본 『임실읍지』에는 명현들의 詩文이 문체별로 詩 38수와 散文 8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작가의 활동시기를 보면 고려 중·후기 李奎報 등 2명, 조선전기 徐居正 등 5명, 조선중기 白光勳 등 5명, 조선후기 宋時烈 등 5명으로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sup>32)</sup>에도 임실현의 驛院과 題詠 항목에 명현들의 작품이 실려있는데, 이를 『임실읍지』에 수록된 작품과 비교해보면 역원의 항목에 보이는 인물들과 시는 동일하나 산문들은 달리 나타난다. 임실현의

32) 『新增東國輿地勝覽』 第39卷 全羅道 任實縣.

驛院: 葛覃驛(李奎報, 金克己, 俛長壽, 僧 選坦), 烏原驛(金克己)

題詠: 金克己「田翁散步傍幽溪」, 金若水「老木荒榛夾古溪」, 鄭麟趾「蕭瑟秋風動客情」, 申叔舟「數家籬落淡煙生」, 成任「近牆嫩綠多喬木」, 鄭昌孫「戶碧山排闥入」, 徐居正「驛樹依稀紅葉亂」, 李叔賦「碧玉池涵虛閣靜」

公館, 驛, 樓亭, 庵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시와 산문은 李奎報, 金克己, 徐居正부터 白光勳, 宋時烈에 이르기까지 총 32명의 명현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임실읍지』에 필사되어 있는 시문들의 제목을 公館, 驛院, 庵子, 堂, 樓亭으로 분류하여 대상이 된 시설들과 그에 따른 작품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任實縣內 施設과 題詠

施設	區分	施設名	作品名 (作品數)	施設	區分	施設名	作品名 (作品數)
公廡	詩	公館	又題公館(7)	堂	詩	恤民堂	題恤民堂(1)
		葛潭驛館	題葛潭驛館(1)			七友堂	七友堂(1)
	散文	客官	任實縣重新客官記(1)			暎梅堂	暎梅堂(1)
驛院	詩	烏原驛	題烏原驛(1)			梨月堂	梨月堂(1), 又題梨月堂(1)
		葛潭驛	題葛潭驛(3)			伴鶴堂	伴鶴堂(1)
庵子	詩	石泉庵	題石泉庵(1)			臨池堂	臨池堂(1)
樓亭	詩	勿夏亭	勿夏亭(2)			飯牛堂	飯牛堂(2)
		孤石亭	孤石亭(3)			喚友堂	喚友堂(2)
		觀缸亭	觀缸亭(1)			友松堂	咏友松堂益梅(3)
		兩樂亭	兩樂亭(2)			聽溪堂	聽溪堂(1)
		鴻雲亭	鴻雲亭(2)		散文	恤民堂	恤民堂記(1)
		仁德亭	題仁德亭(1)			飯牛堂	飯牛堂記(1)
		月潭亭	月潭亭(1)			梨月堂	梨月堂記(1)
	散文	正己亭	正己亭記(1)		伴梅堂	伴梅堂記(1)	
		觀魚亭	觀魚亭記(1)		守巖堂	守巖堂記(1)	

이처럼 명현들이 남긴 역원, 누정, 암자 등의 詩文은 그 당시 임실현의 산수, 산천 등의 풍경과 마을의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色別 담당 관리의 성명이 기록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입실현중기책』의 권말에는 본문의 내용으로 마치고 있어서 처음 갖추어진 상태에서 落張된 것으로 추정된다.

### 3.2 重記의 구성과 내용

『입실현중기책』의 전체적인 기술형식은 ‘房’ 또는 ‘色’을 큰 항목으로 두고 각 항목 옆에 담당관리의 성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재된 色吏는 총 27명이며,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담당색리를 두었고, “○○色” 옆에 담당자명이 다음 표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표 2> 重記內 領域과 擔當色吏

擔當部署	擔當色吏	擔當部署	擔當色吏
禮房	朴文榮	訓導	文昌煥
兵房	文任在	訓練廳執事	徐宗權
刑房	嚴尙燦	作隊色	金志泰
外工房	李禎觀	都書員	文珍
修理色	晋必閻	戶籍色	李德七
內工房	文昌鎭	巡營主人	金定哲
盤器色	金起淳	縣司戶長	文聖宅
軍器色	嚴社允	補民色	晋必閻
山城軍器色	晋必觀	大同色	李秉圭
本倉色	晋應祿	紙所色	李貞圭
山倉色	金載禧	紙筒通人	晋必翰
西倉色	晋必淳	結役色	晋必發
北倉色	嚴啓祚	官廳色	嚴俊國
束伍色	文昌煥		

房과 色의 하위항목에는 縣監이 부임한 연도순으로 ‘[某姓]等內備上’<sup>33)</sup>과 같

33) 等內는 사전적 의미로 관원의 재임기간,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을 말한다.

이 현감의 재임 기간동안 각 물품마다 수량이나 상태가 기술되어 있다. 각 영역은 아래에 ‘-秩’을 별도의 하위항목으로 두고 정비되거나 갖추어진 설비나 비품 등을 구분하여 ‘齋服鋪陳田畝器皿秩’, ‘社稷祭器秩’, ‘厲祭器秩’, ‘三色保秩’,<sup>34)</sup> ‘建物秩’, ‘書冊秩’, ‘雜物秩’로 일괄 정리하고 있으며, ‘紙所色’ 항목에서는 ‘各項條件’의 하위항목을 두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임실현증기책』의 첫 항목에 보이는 禮房은 鄉校의 물품현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부 구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예)	禮房 朴文榮		
	鄉校 鑰篋	26	] 具盖
	鑰篋	26	
	(中略)		
	李等內備上		
	朱書百選	2卷	無形體
	雅誦	2卷	
	齋服鋪陳田畝器皿秩		
	書冊櫝	4坐內	1坐 破
	元庫文書入盛小櫝	1坐	
	明文入盛櫝	1坐	無形體
	笏記入盛櫝	1坐	無形體
	別庫文書入盛櫝	1坐	破不用
	懸額	1坐	軍器來
	社稷祭器秩		
	厲祭器秩		
	木飯器	16坐	] 無形體
	湯器	16坐	
	盤	16立	
	食鼎	1坐	
	養士齋	講堂肆間捌貼盖瓦 揭板君子堂 徐等內棚建 任等內重修 李等內重修矣 額地故 洪等內重修盖瓦	
	(中略)		
	書冊秩		
	孟子大全	7卷	
	諺解	7卷	
	小學大全	5卷內	1卷 校奴 應明 闕失
	諺解	4卷內	1卷 校奴 應明 闕失

34) 조선 후기에 무명이나 곡식을 바치고 軍役을 면제받았던 네 종류의 保人이며, 곧 軍器保·官匠保·紙物保·進上保를 가리키는 말로 이들은 모두 私賤으로 충당하였는데, 『任實縣重記冊』에서는 군기보를 제외하고 세 종류의 保人(三色保秩)에 대해 “進上保150名, 紙物保150名, 官匠保200名 合500名內 未充定298名, 已充定202名內 良146名, 奴56名 合錢348兩內 50兩 巡營主人例下 在錢298兩”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부서명인 禮房과 담당자인 朴文榮의 성명을 기록하고, 鄉校 항목 아래로 그 물품명과 전체수량, 남은 수량, 분급한 수량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물품의 수량에 변동이 생기면 아래에 ‘4坐內 1坐 破’나 ‘1坐 無形體’로 기록되어 있어서 물품이 얼마나 남아있고 없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厲祭祭器秩’의 항목에서 養士齋의 기록을 보면 강당에 君子堂 현판을 걸고, 徐等內 때 창건하였다. 任等內가 중수하고 다시 李等內에 중수되었다가 이후 洪等內에 이르러 重修·蓋瓦된 사실을 기록한 것과 같이 대상물의 변천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 그 사유로서 失火나 紛失, 현존 상태로서 破傷, 毀損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일부 다른 중기류의 기록에서는 책이나 물품 등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개인별 변상이나 형벌에 관련된 기록 등이 나타나지만 본 중기에서는 ‘校奴 應明 闕失’과 같이 분실한 사람의 성명만 표기하고 있다.

한편 중기의 기술 방식면에서는 건물, 서책, 물품의 현존 상태와 수량 변경의 원인에 대하여 기술된 내용을 간추려서 단위·보관상태·소장처별 등의 여건과 상태를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 論語	7卷	破無形體
• 杜詩	18卷內	2卷 崔山笈 失
		5卷 破無形體
• 同慶綸音/鐫役綸音	合193卷內	192卷 各面里播給 1卷 官上
• 戶籍磨鍊記	2張	舊色 次次不傳
• 册房	2間	金等內改瓦
• 官屯案	3件內	2件 丁丑 9月日 橫中燒火
• 戶籍庫	2間	年久頽壓故 李等內改建蓋瓦
• 葉作册	1件	年久闕失

예시와 같이 『임실현중기책』에 기술된 물품수량의 단위 표기법은 해당 물품의 기능과 재료, 속성 등에 따라 件, 坐, 介, 間, 束, 砧, 竹, 雙, 貼, 部, 隻, 面, 箇, 石 등을 사용하였고, 서책은 형태와 구분 단위로서 卷, 册, 秩, 件을 목판은 立을 書案, 紙筒橫 등의 경우 坐, 종이나 문서의 경우 卷, 張을 사용하고 있다.

물품 보관 상태의 표기법으로 물품 자체가 파손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破無形

體, 破不用, 破無, 吏典年久 破無, 舊色次次不傳, 破傷, 革罷已久, 年久闕失 이라 기록하였고, 타인에 의해 분실되거나 파손된 물품은 崔山笈 失, 校奴 應明 闕失, 前色等 闕失, 橫中燒火, 白光葉·徐永綸 等 闕失, 丙子六月 爲賊見失, 失火燒爐 空虛, 駟從等 闕失, 前後編鐵間間破傷, 65介 尹等內改備內 11介間間破傷 등으로 분실한 사람의 이름과 분실된 날짜, 현존 상태가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품의 관리 및 처리현황을 나타낸 표기법으로 修補, 去舊新備, 年久破傷故改備, 久件破不用故金等內備上, 金等內改瓦, 李等內改建蓋瓦, 無形體李等內備上, 文正公祭器新備, 浮紙時新備, 浮紙時 出定各寺 用後還給, 年久破傷故 金等內戊寅改備書員等受, 年久頽壓故 金等內改建, 李等內改建頽壓, 戶籍庫 2間 尹等內移建 雇馬廳樓上庫 등 누구에 의해 무엇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기술되어 있다.

또 물품의 위치나 소장처별 표기법은 各面里播給, 官上, 鄉廳奉安, 政閣上, 官廳上, 庫庫破傷 外工房留置, 使令廳在, 具機新興寺在, 鄭等內修上新興寺在, 入盛櫃子具鎖金, 束伍軍兵等受, 縣額 1坐 軍器來 등과 같이 임실현 내의 관아나 사찰 등으로 물품이 이동하게 되면 수량과 정확한 소장처를 밝혀 두었다. ‘外工房’ 항목에서는 각 匠人의 인원을 파악하면서 冶匠人 11名內 3名種種使役 3名逃亡, 或物故或逃亡, 每朔 柳器1部 上納內 5名物故 라고 기록하여 인원의 변동과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3.3 부임시기별 任實縣監 기록

『임실현증기책』에 나타난 等內와 임실현에 부임했던 현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任實邑先生案』<sup>35)</sup>을 들 수 있다. 『임실읍선생안』은 임실현에서 재임하였던 현감들을 기록한 명부로 1505년(燕山君 15) 부임한 李思謙으로부터 1936년에 敍任한 金鍾淳에 이르기까지 총 190명에 달하는 임실현감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선생안에 의거하여 1723년부터 1852년까지 임실현에 재임했던 현감들

35) 곽한영 撰, 『任實邑先生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37.

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任實邑先生案』의 縣監 目錄

	縣監名	在任期間	備考		縣監名	在任期間	備考
1	李東益	1723.06.17 ~ 1727.08	○	28	南公徹	1790.03.24 ~ 1790.06	
2	沈廷鵬	1727.10.06 ~ 1728.04.01	○	29	李潤瑞	1790.07.15 ~ 1793.06.02	
3	李馨遠	1728.04.10 ~ 1729.06.15		30	洪履簡	1793.06.02 ~ 1795.09	
4	朴斗益	1729.09.07 ~ 1733.10.25		31	李英冑	1795.09.26 ~ 1800.08.15	●
5	李山輔	1734.01.13 ~ 1737.07		32	黃仁紀	1800.08.15 ~ 1801.06	●
6	申堃	1737.09.25 ~ 1742.05.28	●	33	李義著	1801.06 ~ 1804.06.23	●
7	李秀楷	1742.07.02 ~ 1745.03.25	⊙	34	李翊會	1804.07.10 ~ 1806.12.20	
8	徐有常	1745.05.09 ~ 1748.07	●	35	閔致成	1806.12 ~ 1809.08.04	○
9	權基彥	1748.07.29 ~ 1750.08.10	●	36	尹凝烈	1809.08.04 ~ 1812.03.10	○
10	洪應辰	1750.09.26 ~ 1752.03.17	●	37	朴齊顏	1812.03 ~ 1813.04.14	○
11	具善慶	1752.06.10 ~ 1754.07.15	●	38	沈能定	1813.05.07 ~ 1816.02.19	
12	任聖周	1754.09.25 ~ 1758.12.17	●	39	金元根	1816.03.02 ~ 1818.06.25	
13	鄭奎祥	1759.02.12 ~ 1763.12.20	●	40	李種遠	1818.07.16 ~ 1818.10.11	
14	金光默	1764.01.21 ~ 1766.08	●	41	鄭東時	1818.11.06 ~ 1822.09.13	●
15	朴一源	1766.08.20 ~ 1769.12.15	●	42	李道在	1822.10 ~ 1826.06.25	●
16	金敏材	1770.01.25 ~ 1770.05		43	洪鍾遠	1826.07.20 ~ 1830.04.08	
17	金斗衡	1770.06.27 ~ 1771.06.16		44	李敏榮	1830.04.27 ~ 1832.01.05	
18	柳光璧	1771.07.20 ~ 1771.11.01		45	沈宜永	1832.02.06 ~ 1832.06.25	
19	趙光鉉	1771.11.17 ~ 1774.06.10	●	46	洪哲謨	1832.07.21 ~ 1836.12.25	●
20	趙鼎鎮	1774.07.11 ~ 1776.06.15		47	金東獻	1837.01 ~ 1839.12.22	
21	李昌會	1776.07.22 ~ 1779.05	●	48	鄭基輒	1839.12.22 ~ 1843.06.25	●
22	李時淵	1779.07.15 ~ 1781.02.18		49	李敬	1843.07 ~ 1847.06.01	
23	鄭昌期	1781.03.17 ~ 1783.06.09		50	徐護淳	1847.07 ~ 1847.11	
24	尹行儼	1783.06 ~ 1784.12.25		51	申命河	1847.12 ~ 1848.10.8	
25	尹哲東	1785.01.18 ~ 1787.01.15	○	52	金章淳	1848.11 ~ 1851.06	
26	徐有豐	1787.02.02 ~ 1787.08.04	●	53	鄭永朝	1851.07 ~ 1852.02	
27	鄭昌老	1787.08.06 ~ 1790.03		54	沈英澤	1852.03.17 ~ 1853.07.25	

\* ● : '[某姓]等內備上'의 目錄 중 '書冊'의 보충에 관련된 인물임.

○ : 入기를 채우지 못한 考者.

『임실읍선생안』의 기록을 볼 때 1840년에 임실현감으로 있었던 인물은 “鄭基輒”로 확인된다. 정기철은 1839년 12월 22일부터 1843년 6월 25일까지 재임하였고,<sup>36)</sup> 이후 永川郡守로 옮겨갔다.<sup>37)</sup> 정기철(1799~?)의 字는 士行이며, 蔭官으

로 품계는 通訓大夫였다. 『崇禎紀元後四丁亥慶科增廣司馬榜目』에 의하면 정기철은 29세였던 1827년(純祖 27) 丁亥 增廣試에서 생원 2등 16위로 합격하였고 가족사항으로 아버지는 통훈대부였던 鄭是容이며, 동생은 鄭基信이다.

앞의 표에서 임실현감의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대략 2년 3개월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수령들에게 전권을 위임한 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엄하게 문책함으로써 수령들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임기를 채우지 못한 파직자도 많았다.<sup>38)</sup> 한편 임실현감을 지낸 申應渠, 任聖周, 金寧, 南公轍, 金千鎰은 문집이 전해지고 있다.<sup>39)</sup>

이와 같은 『임실읍선생안』의 기록을 통해 1840년에 재임했던 임실현감은 鄭基信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해 1월에 『임실현증기책』이 작성되었으므로 그가 임실현감으로 부임한지 약 한 달 뒤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신·구임 현감간의 解由로 인해 점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임실현증기책』에 기술된 房과 色의 하위항목인 ‘[某姓]等內備上’이 어느 현감이 재임하면서 갖춘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임실현증기책』 내의 기록체계를 일부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申等內備上	
五禮儀	上, 下卷
徐等內備上	
近思錄	4卷 無形體
等內備上	
小學	全秩 具諺解
內賜斥邪繪音	1件

위의 예를 보면 申等內備上, 徐等內備上, 等內備上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각각의 물품들이 어느 현감의 재임시기에 마련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기술되

36) 『日省錄』 憲宗5年 12月 甲申(條). “鄭基轍爲任實縣監.”

37) 『任實邑先生案』. “通訓 己亥十二月二十二日 政以宗廟屠令除拜 癸卯六月二十五日 政移拜永川郡守.”

『日省錄』 憲宗9年, 6月 丁酉(條). “鄭基轍爲永川郡守.”

38) 국립전주박물관(2011), 172.

39) 申應渠 『晚退軒遺稿』(1684), 任聖周 『鹿門集』(1795), 金寧 『遯峯集』(1809), 南公轍 『金陵集』(1815), 金千鎰 『健齋集』(1893).

어 있다. 그리고 현감의 姓氏 없이 “等內備上”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은 그 중기가 작성된 시기의 재임자 때 갖추어진 물품을 기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임실현중기책』에서 ‘등내비상’은 鄭基輓이 현감으로 재임하면서 구비하였던 물품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위 예시의 구비된 서책을 보면 申等內때에는 『五禮儀』 上, 下권을 갖추었으며, 徐等內때에는 『近思錄』 4권을 갖추었으나 1840년경에는 ‘無形體’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분실이나 소실, 파손 등의 구체적 원인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히 존재유무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또 정기철 현감이 재임하던 시기에 갖추어진 『小學』은 全秩이 諺解本으로 남아있고, 『內賜斥邪綸音』 1件도 비치해 두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임실현중기책』에 기록된 물품들 중 ‘書冊’의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禮房, 兵房, 刑房, 外工房의 행정부서 기록에서 다수 확인된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예방에 보이는 물품들은 향교의 물품을 기록한 것이라 서책의 비중이 더 많았다. 앞서 살펴본 <표 3>에 의하여 서책을 비치한 현감을 재임시기와 等內 표기로 일치시켜 연결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重記內 書冊 備置 關聯 等內와 縣監名 對照

項目		縣監名	項目		縣監名	
禮房 [鄉校]	任等內備上	任聖周	兵房	具等內備上	具善慶	
	申等內備上	申埜		李等內備上	李昌會	
	徐等內備上	徐有常		刑房	權等內備上	權基彥
	權等內備上	權基彥			金等內備上	金光默
	洪等內備上	洪應辰	李等內備上		李昌會	
	具等內備上	具善慶	徐等內備上		徐有豐	
	任等內備上	任聖周	外工房		李等內備上	李英胄
	李等內備上	李秀楷			任等內備上	任聖周
	鄭等內備上	鄭奎祥				
	金等內備上	金光默				
	朴等內備上	朴一源				
	趙等內備上	趙光鉉				
	李等內備上	李英胄				
	李等內備上	李義蒼				
	李等內備上	李翊會				
洪等內備上	洪哲謨					
等內備上	鄭基輓					

앞의 표를 보면 『임실현증기책』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항목이 禮房의 향교 물품이며, 任等內 → 申等內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표를 보면 申埜 현감부터 李秀楷 → 徐有常 순으로 현감의 재임순과 맞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처음부분에 나오는 任等內備上(1754~1758)의 ‘任’은 시대 정황상 뒤에 나오는 申等內備上(1737~1742)인 申埜보다 후에 재임했던 인물이어야 하는데, 任씨 성을 가진 현감은 1563년에 재임한 任應麟이다. 그러나 任 현감 때 구비된 서책 중 『尤庵經禮問答』<sup>40)</sup>은 宋時烈이 저술한 책으로서 1730년에 간행된 점으로 볼 때 任應麟은 해당될 수 없고, 이후의 현감 중 1754년부터 재임한 ‘任聖周’로 지정된다.

또 禮房의 13번째에 보이는 ‘李等內’는 <표 3>을 참고하여 재임기간 순으로 대조하면 李等內는 李昌會(1776~1779)이나 이때 구비된 책 목록을 보면 『朱書百選』(1794), 『雅誦』(1799)이므로 이창회가 재임하였던 시기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창회가 아닌 ‘李英胄(1795~1800)’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실현증기책』은 1737년 ‘申埜’ 현감으로부터 1840년 ‘鄭基轍’ 현감 때까지 구비된 물품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문서이며, 임실현은 1737년부터의 회계 및 물품 관리가 100여년 정도 누적되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任實縣重記冊』의 서책과 종이 관련 항목 분석

### 4.1 書冊

임실 현감들이 재임하며 갖추었던 물품 중에서 書冊은 禮房(鄕校)·兵房·刑房·外工房·戶籍色의 여러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방 즉 향교 항목에서는 서책의 비중이 높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文治를 우선시 하였던 국가 정책에

40) 1730년(英祖 6)에 『經禮問答』(『經禮義疑』라고도 함) 24권 10책이 활자로 간행되었다.

부응하고 수령의 지방통치에 기본이 되는 七事<sup>41)</sup> 중 ‘學校興’의 실천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 4곳의 부서에서 관리했던 서책에 대해서 크게 鄉校 所藏本, 官衙 所藏本, 戶口帳籍으로 나누어서 임실현감의 재임시기에 맞춰 어느 등내때 갖추어진 서책 인지를 파악하고, 그 서명을 확인한 뒤 각 소장처별 서책의 수량과 현황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 4.1.1 향교 소장본

앞서 언급한 대로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서책이 禮房의 하위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임실현증기책』의 예방 항목에서는 향교의 물품 현황을 다루었기 때문에 중기 내 기록된 물품현황 중 다른 부서보다 서적에 대한 기록이 다수를 차지한다.

예방에서 관장했던 임실향교의 서책은 ‘80종’으로 확인되었으며, 1840년의 예방 擔當色吏는 朴文榮이다. 향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책을 각 현감의 재임시기에 맞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任實縣 鄉校 保管 書冊 目錄

	縣監名	書名	卷數	備考		縣監名	書名	卷數	備考		
1	任聖周 (1754~ 1758)	論語	7卷	破無形體	9	鄭奎祥 (1759~ 1763)	續自省編	1件			
		" 諺解	4卷	"			經世指掌	2件			
		中庸	1卷	"			孝悌編	1卷			
		大學	1卷	"			警世問答	1卷			
		詩傳	10卷	"			迎恩慶喜錄	1卷			
		小學	8卷	"	10	金光默 (1764~ 1766)	百行源	1件			
		古文眞寶	7卷	"			御製雲漢編	1卷			
		輟英選	上, 下卷	"			11	朴一源 (1766~ 1769)	御製文廟享禮錄	1件	無形體
		通鑑	15卷	"					御製大訓冊	1件	"

41) 七事는 守令이 지켜야 할 일곱 조목이며, 수령이 임금에게 하직을 고하고 任地로 갈 때 啓板 앞에서 수령 칠사를 외었다. 일곱 조목은 農桑盛·戶口增·學校興·軍政修·賦役均·詞松簡·奸猾息이다.

조선 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縣監名	書名	卷數	備考		縣監名	書名	卷數	備考				
		杜詩	18卷內2卷 5卷	崔山笈失 破無形體	12	趙光鉉 (1771~ 1774)	孝悌勸世位冊	1件	無形體				
		三綱行實	1卷	破無形體			明義錄	5卷					
		二倫行實	1卷	"			諺解	4卷					
		戡亂錄	4卷	"			續明義錄	4卷					
		尤庵經禮問答	1卷	"			同慶繪音 鑄役繪音	合193卷內 192卷 各面里播給 1卷 官上					
		陳后山集	5卷	"			字恤典則	193卷內 192卷 各面里播給 1卷 官上					
		擊蒙要訣	1卷	"			加鬮申禁事 節目冊	193卷內 192卷 各面里播給 1卷 官上					
		名臣言行錄	15卷內1卷	無形體									
		朱子節要	10卷內4卷	"									
		孝經大全	1卷	破無形體			13	李英胄 (1795~ 1800)	金忠壯公遺稿冊	1卷			
		" 諺解	1卷	"					御製新印韻考冊	1卷	無形體		
		禮記	16卷內2卷	"					鄉飲禮冊	2卷			
				自警篇			5卷		14	李義者 (1801~ 1804)	朱書百選	3卷內1卷	無形體
				春秋			6卷				擊蒙要訣	1卷	"
				綱目			85卷內3卷	無形體					
				史略			7卷		15	李翊會 (1804~ 1806)	孟子大全	7卷	
				書傳			10卷				" 諺解	7卷	
		周易	15卷	破無形體	小學大全	5卷內1卷	校奴 應明 閻失						
2	申堃 (1737~ 1742)	五禮儀	上下卷		" 諺解	4卷內1卷							
3	徐有常 (1745~ 1748)	近思錄	4卷	無形體	周易大全	14卷							
		警民篇	1卷	"	諺解	5卷							
4	權基彥 (1748~ 1750)	鄉約文	1卷	無形體	書傳大全	10卷							
		養正圖解	1卷		" 諺解	5卷							
5	洪應辰 (1750~ 1752)	三韻聲象	3卷	無形體	詩傳大全	10卷							
					" 諺解	7卷							
6	具善慶 (1752~ 1754)	古文真寶	8卷	"	大學大全	1卷							
					" 諺解	1卷							
7	任聖周 (1754~ 1758)	擊蒙要訣	1卷	"	中庸大全	1卷							
		闡義昭鑑	3卷	具諺解	" 諺解	1卷							
8	李秀楷 (1742~ 1745)	朱書百選	2卷	"	論語大全	7卷							
		雅誦	2卷		" 諺解	4卷							
					16	洪哲謨 (1832~ 1836)	入盛橫 子粧飾 有鎖金 鄉廳 奉安						
							邑宰先生案冊	2件					
					17	鄭基轍 (1840~ 1843)	小學	全秩	具諺解				
							內賜斥邪繪音	1件					

『입실현중기책』에 수록된 향교의 서적은 1737년부터 1843년까지 총 17명의 입실현감 때 약 100여년의 시간을 두고 총 17명의 현감들이 구비한 것으로 이종任聖周 현감(1754~1758)과 李翊會 현감(1804~1806) 때의 서적이 많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표에 나타난 서적을 내용별로 분류 해보면, 유교 경전류·역사서·교훈서·王命이나 內賜된 서책으로 나눌 수 있다.

유교 경전은 『論語』, 『孟子』, 『大學』, 『中庸』, 『詩傳』, 『書傳』, 『周易』 등 四書三經과 기본학습에 관련된 『自警篇』, 『孝悌篇』, 『續自省篇』, 『小學』, 『五倫行實錄』, 『五禮儀』, 『朱書百選』, 『雅誦』 등이 있다. 사서삼경에 대해서는 언해본을 따로 갖추고 있다.

역사서로는 『春秋』, 『綱目』, 『史略』, 『經世指掌』이 있으며, 교훈서로는 『百行源』, 『警世問答』 등이다.

왕명으로 편찬되거나 御製書, 혹은 내사된 서책으로는 『迎恩慶喜錄』, 『御製雲漢編』, 『內賜斥邪綸音』, 『明義錄』, 『續明義錄』, 『王大妃殿綸音』, 『同慶綸音』, 『鑄役綸音』, 『字恤典則』, 『加髻申禁事節目冊』, 『養正圖解』, 『闡義昭鑑』이 있다. 이 중 어저서, 어정류 서책은 18세기 중후기인 영·정조 시기에 간행된 것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비치된 것으로 보아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동경윤음』, 『견역윤음』, 『자홀전칙』, 『가체신금사절목책』은 각각 193권이 있었고, 그 중 192권은 各 面里에 播給하고 1권은 관에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동경윤음』과 『견역윤음』이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내려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홀전칙』을 1783년 11월에 中外에 반포하고 綸音을 내린것<sup>42)</sup>과 1788년에 『가체신금사절목책』을 各 邑마다 1권을 賜給하고, 각 邑에서는 開板과 翻刻을 통해 管下의 邑·鎭·驛·牧에 인출해주고 各 邑에 1권을 本邑에 인출해 올렸다<sup>43)</sup>는 기록이 『정조실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동경

42) 『正祖實錄』 正祖7年 11月 壬辰(條).

43) 『正祖實錄』 正祖12年 10月 庚子(條).

윤음』과 『견역윤음』도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내려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 1783년 9월 7일조에 元子 初度 良辰을 맞이하여 “구휼에 관한 윤음”<sup>44)</sup> 기사와 10월 8일조 “湖南 民人에게 綸音”<sup>45)</sup>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두 기사가 『동경윤음』 및 『견역윤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추정만 할 뿐이다. 또한 『內閣日曆』 1783년 10월 25일조에 의하면 전라감사 趙時偉가 장계를 올려 각 邑·面·리에 윤음을 찍어 내린 숫자가 약 8,000여건에 달하는데, 그 중 任實各里에는 274건이 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윤음』, 『견역윤음』, 『자휼전칙』, 『가체신금사절목책』이 각각 193권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81권의 수량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임실현 관아 및 각 부처에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실현중기책』이 작성된 1840년을 기점으로 총 73종의 서책 중에서 37종은 ‘破無形體’로 남아있지 않고, 이 중 『小學大全』과 언해본은 ‘校奴 應明이 잃어버렸다’라고 그 사유를 간단하게 기술해 놓기도 했다. 또 35종은 현존하고 있으며, 마지막 1종은 『邑宰先生案冊』 2件으로 ‘入盛 橫子粧飾有鎖金 鄉廳奉安’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임실읍지』의 ‘公署’ 항목에도 ‘邑宰先生案橫奉安鄉廳’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찍부터 『邑宰先生案』<sup>46)</sup>은 나무상자에 담겨 鄉廳에 봉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기에 수록된 향교소장의 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임실읍지』의 ‘學校’ 항목을 보면 당시 향교에 소장한 책의 서명과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禮房 항목에 기록된 향교 소장의 서책과 그 수량을 비교하여 변화의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44) 『正祖實錄』 正祖7年 9月 乙未(條). “下綸音于中外曰 是日 卽元子初度良辰也. (中略) 無使一民愁苦之聲 作於學國同慶之日. 仍命綸音一通 令諸道方伯 守令 眞諺翻譯 布諭坊曲 俾無一夫一婦 不知不聞.”

45) 『正祖實錄』 正祖7年 10月 庚子(條).

46) 『읍제선생안』은 그 기술체제가 어떠한지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임실읍선생안』의 내용과 같은 임실현의 감사와 수령을 대상으로 한 전임관원의 文簿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任實邑誌 ‘學校’條와 重記 ‘禮房’에 收錄된 書冊 對照

	書名	『任實邑誌』學校	『任實縣重記冊』禮房(鄉校)	備考
1	綱目	83卷	85卷內 3卷 無形體	
2	春秋	6卷	6卷	●
3	大學	1部	1卷 破無形體	
4	通鑑	13卷	15卷 破無形體	
5	詩傳	6卷	10卷 破無形體	
6	古文眞寶	4卷	15卷 破無形體	
7	三綱行實	1卷	1卷 破無形體	
8	周易	11卷	15卷 破無形體	
9	禮記	16卷	16卷內 2卷 破無形體	
10	小學	4卷	8卷 破無形體	
11	杜詩	17卷	18卷內 2卷 崔山笈 失 5卷 破無形體	
12	中庸	1部	1卷 破無形體	
13	自警編	5卷	5卷	●
14	朱子節要	10卷	10卷內 4卷 無形體	
15	書傳	10卷	10卷	●
16	論語	7卷	7卷 破無形體	
17	孝經	1卷	1卷 破無形體	
18	選文掇英	1卷	上下卷 破無形體	
19	史略	7卷	7卷	●
20	名臣言行錄	19卷	15卷內 1卷 破無形體	
21	五禮儀	1部	上下卷	●

『임실읍지』의 정확한 간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앞서 언급한 바<sup>47)</sup> 1737년 이후라고 추정되는데, 1840년에 작성된 『임실현중기책』 보다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실읍지』의 ‘學校’ 항목에 기록된 서책은 총 21종이고, 『임실읍지』를 『임실현중기책』과 대조해본 결과 서명과 수량이 동일한 서책은 『춘추』, 『자경편』, 『서전』, 『사략』, 『오례의』 등 5종이다. 또 『임실읍지』의 수량과 같으나 1840년 중기에는 破無形體인 서책이 8종이었으며, 그 외 8종은 1737년 이후에 서책이 보충되어

47) 주 12) 참고.

갖추고 있었으나 破無形體로 인해 수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의 표에서 『임실현중기책』의 21종 서책 중 『오례의』는 申埜 현감 때 구비되었고, 그 외 20종은 任聖周가 현감으로 재임 중일 때 구비된 서책이다.

그밖에 서책 전존의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任實鄉案』(1960)<sup>48)</sup>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書籍’ 항목에서 서책 목록을 대조하여 1840년대의 기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명과 책 수량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대조본인 『임실향안』은 郭漢永이 저술한 것으로 임실향교와 관련된 기록과 향교 내의 건물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全圖가 수록되어 있다.

<표 7> 重記收錄 鄉校書冊과 鄉案收錄 書冊 比較

	『任實縣重記冊』 ‘禮房(鄉校)’		『任實鄉案』 ‘書籍’		備考
1	杜詩	18卷內 2卷 崔山笈 失 5卷 破無形體	杜詩	12卷	
2	名臣言行錄	15卷內 1卷 無形體	名臣錄	14冊	●
3	朱子節要	10卷內 4卷 無形體	朱子節要	6冊	●
4	禮記	16卷內 2卷 破無形體	禮記	15卷 1帙	
5	自警篇	5卷	自警篇	5冊	●
6	春秋	6卷	春秋胡氏傳	6卷	●
7	綱目	85卷內 3卷 無形體	綱目	82卷 1帙	●
8	書傳	10卷	書傳	1帙 10冊	●
9	養正圖解	1卷	養正圖	2卷 1帙	
10	闡義昭鑑	3卷	闡義昭鑑	2冊	
11	雅誦	2卷	雅頌	2卷 1帙	●
12	續自省編	1件	御製續自省篇	1卷	●
13	經世指掌	2件	經世指掌	2卷	●
14	迎恩慶喜錄	1卷	迎恩慶喜錄	1冊	●
15	御製雲漢篇	1卷	御製雲漢篇	1卷	●
16	金忠壯公遺稿冊	1卷	金忠夢遊錄	1冊	●

48) 『任實鄉案』(1960)은 洪淳翼 編의 石版本(전남대도서관 소장), 郭漢永 編의 石版本(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郭漢永 等編의 石版本(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郭漢永 編의 木版本(원광대도서관 소장)이 있다. 목록은 卷上(곽한영의 序, 건치연혁, 향교위치 등), 卷中(舊鄉案座目), 卷下(新增案座目)로 구성되어 있다.

	『任實縣重記冊』‘禮房(鄉校)’		『任實鄉案』‘書籍’		備考
17	五倫行實錄	4卷	五倫行實錄	4卷 1帙	●
18	朱書百選	3卷內 1卷 無形體	朱書百選	2卷	●
19	孟子大全	7卷	孟子	1帙 7冊	●
20	周易大全	14卷	周易	1帙 14冊	●
21	詩傳大全	10卷	詩傳	1帙 10冊	●
22	大學大全	1卷	大學	1帙 1冊	●
23	中庸大全	1卷	中庸	1帙 1冊	●
24	論語大全	7卷	論語	1帙 7冊	●
25	小學	全秩	小學	2帙 10冊	
26	內賜斥邪綸音	1件	斥邪綸音	1冊	●

\* 『임실현중기책』 1840년, 『임실향안』 1960년 편찬

『임실현중기책』의 향교 항목에 있는 서책들 가운데 破無形體, 消失, 破不用 되어 없어진 책을 제외하고, 1840년에 향교에서 갖추고 있었던 책은 총 43종인데, 이중 『임실향안』의 서적항목과 비교해 본 결과 26종의 서명이 같음을 확인하였고, 『杜詩』, 『禮記』, 『養正圖解』, 『闡義昭鑑』, 『小學』을 제외한 21종은 책의 수량 또한 같아서 100여년이 훨씬 지난 1960년까지도 임실현 향교의 서책이 잘 보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1.2 관아 소장본

관아에서 소장하고 있던 서책은 『임실현중기책』의 ‘兵房’, ‘刑房’, ‘外工房’의 하위항목에서 확인된다. 이 또한 각 현감의 재임시기에 맞게 대조해서 서책들을 나열하고 분류하여 수량과 상태 그리고 관아에서 어떤 서책을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표 8> 部署別 備置 書冊

擔當部署	縣監 및 在任期間	書名	卷數	備考
兵房 (文任佐)	具善慶 (1752~1754)	兵將圖說	1卷	破不用
	李昌會 (1776~1779)	兵學指南	1卷	
刑房 (嚴尙燦)	未詳	續大全	4卷內	吏典年久破無
		丁亥受 教錄	1卷	
		大明律	7卷	破無
		經國大典	4卷	破無
		無冤錄	1卷	破無
	權基彥 (1748~1750)	經國大典	4卷	破無
		大典前後續錄	2卷	破無
		新增無冤錄	1卷	
	金光默 (1764~1766)	警民綸音	1卷	
		大明律	4卷	
	李昌會 (1776~1779)	經國大典	4卷	
		欽恤典則	1件	
	徐有豊 (1787~1787)	大典通編	4卷	
新頒律令		1卷		
李英胄 (1795~1800)	無冤錄	3卷		
外工房 (李禎觀)	任聖周 (1754~1758)	農家集	1卷	破無形體
		雲水誌	1卷	破無形體

관아 소장본은 19종으로 ‘兵房’에는 『兵將圖說』, 『兵學指南』의 병서, ‘刑房’에는 법전과 형률서 그리고 법의학서가 갖추어져 있었다. 법전에는 『經國大典』, 『大典通編』, 『欽恤典則』이 있고, 형률서로는 『大明律』과 『新頒律令』, 법의학서는 『新增無冤錄』과 『無冤錄』이 구비되어 있었다.

병방·형방에 갖추어진 서책들은 병서와 법전 그리고 형률서 및 법의학서로 이는 지방의 통치와 직결되는 기본적인 서적류이며, ‘守令 七書’ 중 질서를 바로 잡고 소송을 줄이는데 실천하는 기본적인 자료인 것이다.

‘外工房’에는 任聖周 현감때 『農家集』과 『雲水誌』가 각 1권씩 갖추어져 있던 것이 1840년 중기 작성시에는 없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운수지』는

읍지 개념의 지리서로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원광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905년에 간행된 목판본이고,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것은 서명이 『운수지』로 5卷本이며, 원광대학교에 소장된 『운수지』는 1924년에 임실군에서 간행된 것으로 3卷 3冊의 목활자본이다. 당초 『운수지』는 1권이 있었으나 1840년 중기 작성 시기에는 책의 형태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체재와 내용으로 편찬된 책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현재 3곳에 소장된 『운수지』와는 그 체재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된다.

### 4.1.3 戶口 帳籍

『임실현중기책』의 물품 중 앞서 살펴본 六房의 부서에 구비된 서책은 아니지만 ‘戶籍色’의 하위항목에 총 55종의 戶口 帳籍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호구 장적이 작성된 시기와 책의 수량,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고, ‘호적색’의 마지막 부분에 임실현의 총 가구수와 남녀 인구수의 기록을 『임실읍지』의 ‘戶額’과 비교·검토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9> 重記內 戶口 帳籍

番號	帳籍名	數量 및 變動事項	作成年度	任實縣監 對照
1	舊大帳	17卷 前後朽傷內 7卷 白光葉 徐永綸 等 闕失 在10卷	.	.
2	丙午籍	1卷 北三面以下破傷	1666	洪璣
3	己酉籍	1卷 視面麻衣破傷	1669	尹善得
4	籍	1卷	.	.
5	壬子籍	1卷 丙子六月 爲賊見失	1672	申啓澄
6	戊午籍	2卷內 西邊 1卷 破傷 1卷 無	1678	鄭有徵
7	辛酉籍	1卷 破傷	1681	李文著
8	甲子籍	2卷 丙子六月日 爲賊見失	1684	李允文
9	丁卯籍	2卷內 東邊 1卷 上北驛村以下破傷 西邊 1卷 新安玄谷以下破傷	1687	
10	庚午籍	2卷內 1卷 丙子六月日 爲賊見失 1卷 破傷	1690	權玟
11	癸酉籍	2卷	1693	鄭翊周
12	丙子籍	2卷	1696	

조선 후기 전라도 임실현 <증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番號	帳籍名	數量 및 變動事項	作成年度	任實縣監 對照	
13	己卯籍	2卷內 東邊 1卷縣內面水庫以下破傷 西邊 1卷破傷	1699	李泰東	
14	壬午籍	2卷	1702	崔天瑞	
15	乙酉籍	3卷內 東邊 1卷 白光葉闊失 在2卷	1705		
16	戊子籍	3卷	1708	崔後徵	
17	辛卯籍	3卷 合7卷內 3卷 丙子六月日 爲賊見失 在 4卷	1711	李望雲	
18	甲午籍		2卷	1714	韓璠 (李道運)
19	丁酉籍		2卷	1717	李萬成 (李漢佐)
20	庚子籍		2卷	1720	沈世浚 (金鼎相)
21	癸卯籍	2卷 丙子六月日 爲賊見失	1723	沈湊 (李東益)	
22	壬子籍	2卷	1732	朴斗益	
23	戊午籍	2卷	1738	申埜	
24	辛酉籍	2卷	1741		
25	甲子籍	2卷	1744	李秀楷	
26	丁卯籍	2卷	1747	徐有常	
27	庚午籍	2卷	1750	權基彥 (洪應辰)	
28	癸酉籍	2卷	1753	具善慶	
29	丙子籍	5卷	1756	任聖周	
30	己卯籍	5卷	1759	鄭奎祥	
31	壬午籍	5卷	1762		
32	乙酉籍	5卷	1765	金光默	
33	戊子籍	5卷	1768	朴一源	
34	辛卯籍	5卷	1771	金斗衡 (柳光璧)	
35	甲午籍	5卷	1774	趙光鉉 (趙鼎鐵)	

癸卯以下 22卷 丙子六月日 爲賊見失 辭緣報營門而書目及闊失置簿記  
白光葉 李太成 徐永洽 等次次不傳

紙牌板子	2件	鎗鐵	} 金汝采不傳
丙辰五家作統	2件		
印出板	1立		
周狹	1介		
各項上下記	15張	金汝采不傳	
戶籍磨鍊記	2張		} 舊色 次次不傳
關文謄錄	1件		
甲子丁卯庚午式謄錄冊	2件		

36	丁酉籍	5卷	1777	李昌會
37	庚子籍	5卷	1780	李時淵
38	癸卯籍	5卷	1783	鄭昌期 (尹行儼)

39	丙午籍	5卷	1786	尹哲東
40	己酉籍	5卷	1789	鄭昌老
41	壬子籍	5卷	1792	李潤瑞
42	乙卯籍	5卷	1795	洪履簡 (李英胄)
43	辛酉籍	5卷	1801	黃仁紀 (李義蒼)
44	甲子籍	5卷	1804	李義蒼 (李翊會)
45	丁卯籍	5卷	1807	閔致成
46	庚午籍	5卷	1810	尹凝烈
47	癸酉籍	5卷	1813	朴齊顏 (沈能定)
48	丙子籍	5卷	1816	沈能定 (金完根)
49	己卯籍	5卷	1819	鄭東時
50	壬午籍	5卷	1822	李道在
51	乙酉籍	5卷	1825	李道在
52	戊子籍	5卷	1828	洪鍾遠
53	辛卯籍	5卷	1831	李敏榮
54	甲午籍	5卷	1834	洪哲謨
55	丁酉籍	5卷	1837	金東獻

앞의 표와 같이 戶口 帳籍(이하 帳籍)이 총 55종 확인되어 장적명의 干支로 작성 시기를 대조해 본 결과 1666년에서 1837년까지 3년마다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어진 보충 기록에서는 癸卯籍(1783) 이하 22권은 丙子년 6월에 도둑맞아 잃어버린 사실을 감영에 서목과 함께 잃어버린 장적의 置簿記를 보고하였고, 白光葉, 李太成, 徐永洽<sup>49)</sup> 등이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기록된 인물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호적을 담당하고 관리해오던 인물(色吏)들로 추정된다. 또한 ‘丙子 六月日 爲賊見失’의 기록은 1672년부터 1723년 癸卯까지 보이며, 1774년의 甲午籍 아래에 보충 기록된 점으로 보아 丙子は ‘1756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밖에 장적과 관련된 물품과 문서로 紙牌板子, 印出板, 周狹, 戶籍磨鍊記, 關文謄錄 등을 갖추고 있었으나 1840년 당시에는 인출판과 주협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9) <표 9>에서 ‘舊大帳’의 수량 및 변동사항을 보면 ‘徐永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전라도 임실현 <증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호구 장적은 戶籍庫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호적고와 관련된 내용은 증기내 항목 중 縣司戶長과 補民色에 기록되어 있다. 호적고 2칸은 오랜시간으로 인해 퇴락하여 李等內(李潤瑞, 1790~1793)때 다시 세우게 되었고, 尹等內(尹凝烈, 1809~1812)때에 이르러 호적고 2칸을 雇馬廳 樓上庫로 移建하였다.

호적색의 마지막 부분에 임실현의 가구수와 남녀 인구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1840년의 임실현 가구수는 총 6,240戶이며, 인구는 21,866명으로 그중에 남자가 10,669명, 여자는 11,197명이다. 『임실읍지』의 ‘戶額’ 항목을 보면 “己酉(1729)式年 成籍 元戶 5,346戶 作統 1,069統 一戶內 男丁 9,101口 女丁 10,333口 合人口 19,433口”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110여년이 지난 시간동안 임실현의 인구수도 증가하였는데, 『임실읍지』와 『임실현증기책』의 호적을 비교해보면, 임실현의 전체 가구수는 894戶, 남자 568명, 여자 864명이 각각 증가하였다.

## 4.2 文書

『임실현증기책』에 기록된 禮房, 作隊色, 都書員, 縣司戶長, 補民色の 항목을 통해서 그 당시 임실현에 비치되어 있던 문서의 성격과 수량, 그리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표는 예방, 도서원, 보민색 등의 항목에 기록된 文書의 종류와 수량 및 보관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 10> 部署別 文書 關聯 記錄

擔當部署 (擔當者)	文書 및 文書櫃	數量 및 狀態	備考
禮房 (鄉校) (朴文榮)	書冊櫃	4坐內 1坐破	
	元庫文書入盛小櫃	1坐	
	明文入盛櫃	1坐 無形體	
	笏記入盛櫃	1坐 無形體	
	別庫文書入盛櫃	1坐 破不用	
	居接儒生案	1 入盛櫃子具鎖金	
	節目	1 入盛櫃子具鎖金	
作隊色 (金志泰)	三局保入作隊都案	1件	

擔當部署 (擔當者)	文書  및  文書櫃	數量  및  狀態	備考
都書員 (文珍)	癸卯年導行帳	4 卷	1723
	己卯道峰田畚打量册	1 前色等闕失	1759
	行審册	1 前色等闕失	
	甲戌導守册	1	1754
	諸宮家打量册	9卷	
	於義宮庚寅免稅打量册	2	1770
	龍洞宮折受打量册	2	
	己巳導行帳	7卷 前後編鐵間間破傷	1749
	導守册	1	
	量田關文謄錄册	1	
	壬寅十月日淑安公主房位丁酉折受 御覽所付減縮者免數成册	1	1782
	丙申續仍陳册	1 前色闕失	1776
	庚申量後陳降續都成册	1	1800
	甲戌導行帳	11卷 庫庫破傷內工房留置	1814
	己丑上下新德新平量外加耕毓祥宮折受圖畧	1張	1829
	各面別件	20件 書等分給 己亥改量後罷棄 4件 官上 己亥改量後罷棄	
	己巳改量各陳大帳	17卷	1809
	各面行審册	194卷 年久破傷故 金等內戊寅政備書員等受	
	戊寅改量關文	1	1818
	己巳查陳大帳	3	1809
陳改量關文册	1		
己丑永頤各陳成册	8件	1829	
丙申查陳册	4件	1836	
縣司戶長 (文聖宅)	册房	2間 金等內改瓦	
	戶籍庫	2間 尹等內移建 厩馬廳 樓上庫	
	吸唱廳	1間 金等內改建蓋瓦	
	縣司印信	1顆	
	官屯案	3件內 2件 丁丑9月日 櫃中燒火	1817
補民色 (晋必閣)	田畚案	1件	
	節目	3件內 2件 申秀昆不傳	
	新舊馬案	2件	
	時節目	3件	
	田畚明文	1坐 入盛楨子	
	戶籍庫	2間 年久頹壓故 李等內改建蓋瓦	
	民庫新節目	1件	
	貢膳定例册	1件	
	貢膳定例新件	1 庚寅春自營門下來	

향교에서 보관한 문서로는 元庫文書, 明文, 笏記, 別庫文書, 居接儒生案, 節目 등으로 나무상자[櫃子]에 담아 보관을 하였고, 居接儒生案과 節目은 자물쇠가 갖추어진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都書員의 항목에서는 토지대장과 징세장부, 關文 등 23종의 문서를 관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번씩 전국적인 규모로 量田<sup>50)</sup>을 실시하고, 量案<sup>51)</sup>을 작성하여 호조 및 해당 도와 읍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양전은 많은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양안을 작성하였다. 도서관 항목에 기록된 임실현의 토지대장 및 문서들도 이에 준하여 작성된 것이라 추정된다. 토지대장 문서는 대부분 문서명 앞에 干支를 붙인 다음 그 문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導行帳, 田畚打量冊, 導守冊, 謄錄冊, 行審冊, 查陳大帳, 改量關文, 查陳冊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문서명에 나타난 간지를 통해 시기를 확인해 본 결과 1723년부터 1836년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8년마다 토지대장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各面行審冊’은 194권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경과하여 파손이 많았던 까닭에 金等內때인 戊寅년에 書員 등이 정비한 것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 다음 행에 ‘戊寅改量關文’이라는 문서는 1818년에 당시 현감인 金等內 즉 金元根(1816~1818)의 재임시에 작성된 토지문서로 추정된다.

縣司戶長인 文聖宅은 冊房, 戶籍庫, 吸唱廳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이며 公土를 다룬 문서로 보이는 官屯案과 官印도 보관하고 있었다.

補民色에서 보관한 문서는 8종이 있으며, 이 중 『貢膳定例冊』<sup>52)</sup> 1권은 洪等內(洪履簡) 때 구비되었는데 洪等內的 재임시기(1793~1795)로 볼 때 1795년 이전에 임실현에 비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830년(庚寅) 봄에 監營으로부터 새로 『貢膳定例』 1권을 받았는데, 이는 洪等內(洪鍾遠, 1826~1830) 때 구비된 것이다.

한편 중기내 紙筒通引<sup>53)</sup>항목에는 紙筒櫃의 기록이 있는데, 선행연구 된 경상

50) 『經國大典』 戶典, 量田(條).

51) 量案은 田案, 導行帳, 田籍 등으로도 불렸다.

52) 『貢膳定例』는 활자본 1책으로 1776년(정조 즉위)에 正祖가 각종 貢膳 진상품의 물품, 수량과 진상방법을 감축하고 개정하여 관계 기관과 8도에 반포한 것이다.

도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 분석<sup>54)</sup>을 보면 가장 큰 특징으로 紙筒文書를 千字文 순서에 따라 수령들의 재임 기간 중에 처리하였던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임실현중기책』은 天字, 地字, 玄字, 黃字, 宇字, 宙字의 천자문으로 매겨진 지통궤의 항목만 보일 뿐 중기내 문서들의 보관 형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4.3 製紙와 寺刹

#### 4.3.1 ‘楮’ 産地의 變化

『임실현중기책』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가 종이와 사찰 관련 기록이다. 종이는 예로부터 임실과 인접하고 있는 전주가 유명하여 『세종실록』 『지리지』 全州府條에 다양한 종이가 생산<sup>55)</sup>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전주 종이는 ‘上品’<sup>56)</sup>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전주와 임실은 서로 맞닿아 있어서 두 지역 간에 종이와 관련된 행정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그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임실현중기책』 紙所色 항목의 내용과 여러 사료에서 임실현의 닥나무[楮]와 종이[紙]에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고, 중기에 언급된 사찰이나 지역의 사찰제지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9권 임실현편의 土産條에 銀口魚·蜂蜜·紫草·薑·苧·楮·白花蛇·地黃·鬱金·漆·石菖 중 楮의 기록과 『임실읍지』의 土産항목에서 蜂蜜, 柿, 楮, 柒, 梨, 胡桃, 銀杏, 木瓜, 栗, 木油, 銀口魚, 生豬 중 닥나무가 중요한 토산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기록으로 볼 때 임실현에서는 楮田 즉 닥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3) 天字, 地字, 玄字, 黃字, 宇字, 宙字 紙筒橫 6坐內 五坐無形體.

54) 南權熙(2012).

55) 『世宗實錄』 『地理志』 全州府 土宜(條). “紙 表箋, 奏本, 副本, 咨文, 書契 等紙及表紙, 擣鍊紙, 白奏紙, 油苧, 歲畫眼紙. 道內唯此府 與南原品好.”

56)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3권 全州府 土産(條). “紙 上品.”

또 純祖(1800~1834)연간에 편찬된 徐有渠의 『林園經濟志』에 당시 조선에서 생산되는 종이 특산품에 대해 한성의 조지서에서 만든 咨文紙, 강원도 평강에서 만든 雪花紙, 전주·남원의 扇子紙, 簡壯紙, 注油紙, 油芚紙를 최고로 치고 있다.<sup>57)</sup> 한편 같은 책에서 종이 생산지와 그 원료의 생산지에 대한 기록 중 ‘楮’의 산지로 임실이 포함되어 있다.

<표 11> 『林園經濟志』의 紙 生産 關聯 湖南地域

湖南	紙	南原, 潭陽, 淳昌, 雲峰, 順天, 羅州, 光州, 茂長, 南平
	楮	龍潭, 任實, 茂朱, 谷城, 玉果, 鎮安, 樂安, 寶城, 光陽, 求禮, 同福, 金溝, 咸平, 海南
	楮·紙	全州
	山楮	扶安, 濟州

『임원경제지』의 기록으로 볼 때 각 군현별로 정확한 생산량은 확인할 수 없으나 호남 지방이 종이나 원료면에서 전체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58)</sup> 그러나 ‘楮’ 산지로서의 임실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많은 변화를 가져온 듯하여 조선말기 吳宥默이 저술한 지리서 『輿載撮要』(1893)에 기록된 紙·楮 생산지 상황을 보면, 다른 지역은 『임원경제지』에 나타나는 산지와 큰 차이가 없지만 임실은 빠져있다.

<표 12> 『輿載撮要』의 紙 生産 關聯 湖南地域

全羅北道	紙	全州
	楮	南原, 鎮安, 求禮, 雲峰
全羅南道	紙	順天
	白紙	高敞
	楮	光陽, 南原, 同福, 谷城, 潭陽, 長興

57) 『林園經濟志』 怡雲志, 文房雅製下, 紙, 東國紙品. “若今造紙署之咨文紙 平康之雪花紙 全州·南原之扇子紙 簡壯紙 注油紙 油芚 實天下之所稀.”

58) 김병남, “全州 지역의 韓紙 발달과 현실,” 『남도민속연구』 10輯(2004), 24.

이를 바탕으로 후술할 중기의 종이 관련 기록과 연결지어 추정해보면 임실현은 전주의 닥나무와 종이 관련 사업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했으며, 18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 임실현에서 종이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은 알기 어려우나 『세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으로 보아 종이의 원료인 닥나무가 조선전기부터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3.2 종이 관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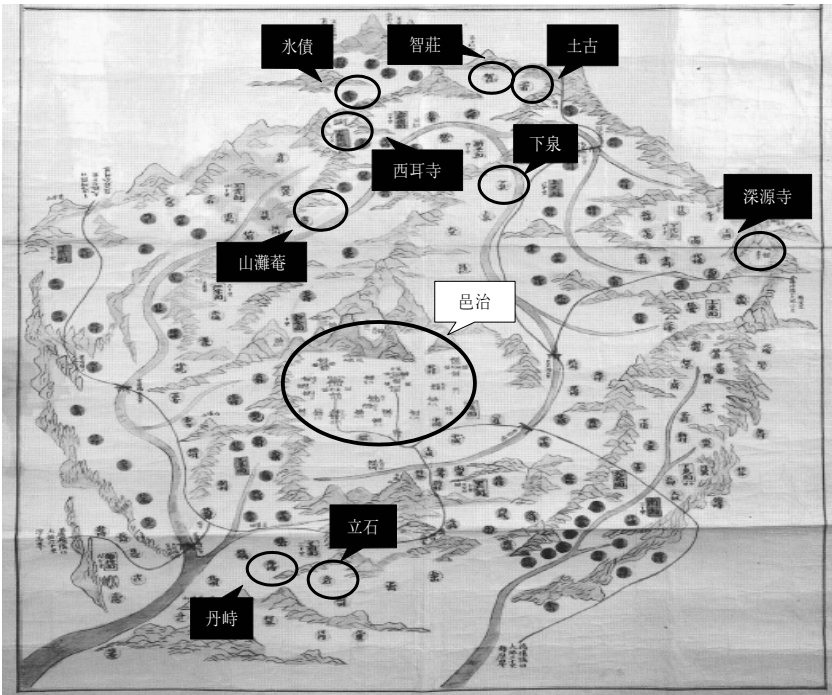
중기의 권말에는 종이 관련 기록이 紙所色 항목 아래 자세하게 나타난다. 종이를 만드는 ‘紙所’와 관련된 물품으로는 종이의 종류, 지역별 皮紙의 가격, 운영 상태 등과 관련된 항목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품과 그 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임실현중기책』의 ‘紙所色’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白綿紙	簡壯紙	中壯紙	小壯紙	各壯油紙	啓目紙	大好紙	
	搗鍊紙	白紙	皮紙					
②	皮紙本價	新平智莊洞		42兩				
		毛都	各	36兩				
		土古之		47兩				
		下泉里		43兩				
		玉田立石里		20兩				
		丹峙里		30兩				
		下新德 水債里		40兩				
		上東 深源寺里		16兩				
		上新德 山灘菴		20兩				
		下新德 西耳寺		40兩				
		合錢	334兩					辛卯爲始因營關革罷

먼저 임실현에서 생산된 종이의 종류로 ①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8종이 있는데, 목화를 섞어서 만든 예단에 쓰이는 白綿紙부터 임금께 올리는 化目을 쓰는 용지인 啓目紙, 서적이거나 한약 포장, 창 의 도배지 등에 쓰이는 白紙, 다듬잇돌에 두들겨 다듬은 搗鍊紙, 두껍고 품질이 좋은 편지지 등을 만드는 壯紙인 簡壯紙

등 종이 두께, 용도, 색깔, 크기 등 다양한 종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②에서는 종이의 생산지와 해당되는 종이값이 각 리별로 기재되어 있어서 임실현내 지역별 紙價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皮紙의 부피나 무게의 기준 단위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종이의 생산지 중 ‘毛都’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나머지 智莊, 土古之, 下泉里, 立石里, 丹峙里, 水債里, 深源寺, 山灘菴, 西耳寺 등은 『任實縣地圖』<sup>59)</sup>에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任實縣地圖』內的 紙 生産地

위 『임실현지도』에 표시된 종이 생산지를 보면 가운데 鄉廳을 중심으로 북쪽

59) 『任實縣地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 많다. 중기 기록에 의하여 임실에서 닻나무가 많이 심어진 지역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종이를 거두어 들었던 지역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皮紙本價’의 항목을 통해 이 당시 임실현의 紙價 총 합이 334兩이 되고 그 아래에 ‘辛卯爲始因營關革罷’ 라고 쓰여져 있는데, 각 지역에 해당된 지가는 ‘신묘년 영관의 혁파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하여 여기서의 ‘辛卯’는 1771년(英祖 47)과 1831년(純祖 31)의 두 시기 중 중기가 작성된 시기로부터 가까운 1831년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4.3.3 寺刹 製紙 記錄

#### 4.3.3.1 各項條件

지소색 다음 하위 항목으로 ‘各項條件’을 보면 임실현에서 종이를 제조하는데 사용했던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항조건의 항목을 보면 1840년의 시점에서 앞서 皮楮를 사오는 것은 色吏가 거행하였는데 제도가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닻나무를 다듬는 작업인 鍊楮를 深源寺와 山灘菴에서 맡아서 하였으나 革罷되었다. 猛灰는 智莊里에서 18石, 土古里에서 17石, 毛都谷里에서 10石, 下泉里에서 15石을 거두었고, 17면에는 勸農의 사유로 每名 2石씩 습 34石을 거두었으나 이 또한 혁파되었다. 그외에도 임실현에서 제지업이 이루어졌던 기록들로 楮膠는 深源寺, 山灘菴, 西耳寺에서 담당하였고, 닻나무를 두들기는 작업인 종이 제작 공정에서 搗楮軍은 읍내에서 충당하지 못하여 모집하여 시행하였다. 擣楮軍은 심원사에서 담당하였다. 또 종이를 두들기는 紙砧, 종이를 두들길 때 아래에 놓는 돌인 紙臺石, 종이를 뜨는 틀인 紙桶板子, 白綿紙·簡壯紙·中壯紙·小壯紙 등 각종 종이를 뜨는데 쓰이는 紙簾 등의 물품은 新興寺에 갖추어져 있었다.

조선 후기 전라도 임실현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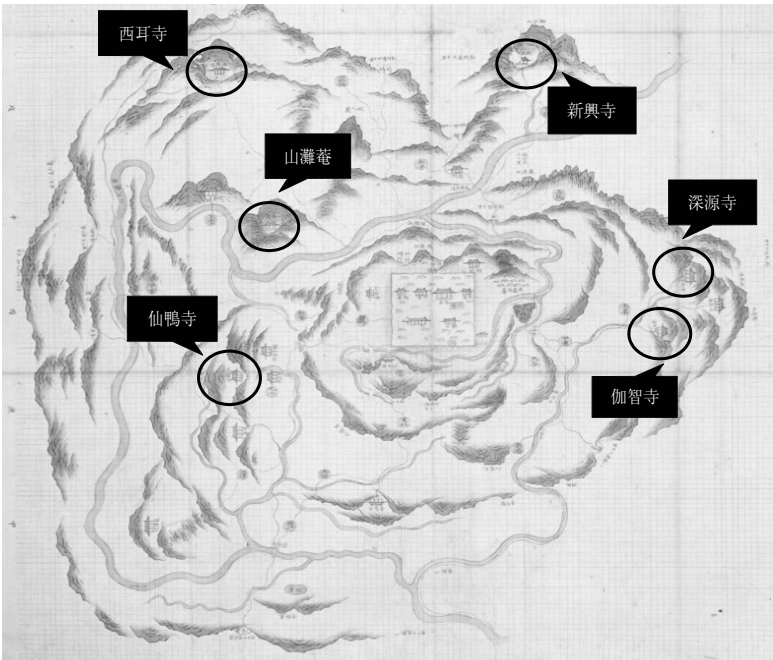
皮楮質來 色吏 舉行		革罷已久
鍊楮 深源寺 山灘菴 舉行		革罷已久
猛灰 智莊里 18 石	}	革罷已久
土古之里 17 石		
毛都谷里 17 石		
下泉里 15 石		
十七面 勸農 每名 2 石式 合 34 石		
楮膠 深源寺 山灘菴 西耳寺 擔當		革罷已久
搗楮軍 以邑底閑散 募得舉行		
擣楮軍 深源寺 擔當		革罷已久
紙所僧 5名 復戶米 15石 自結廳 上下		革罷已久
工價 35兩 自紙所 上下		革罷已久
紙砧 1具 砧石 新興寺在		
紙臺石 1		
紙桶板子 9 立		
木綿巾帶	浮紙時新備	
白綿紙簾 1	}	革罷已久
搗鍊紙簾 1		
油衫紙簾 1		
大好紙簾 1		
中壯紙簾 1	}	浮紙時 出定各寺 用後還給
小壯紙簾 1		
條乙所 隨所入自工房 上下		
100斤 釜子 1	}	鄭等內備上 新興寺在
食鼎 1 坐		
已上各條件紙所革罷自在勿論中		
除番軍官 246名 紙所革罷後報 營門設置 每名 春秋各 1兩 收捧質用紙物		
秋等除番 錢 190兩內	}	80兩 營主人例下 12兩 除番 兵房例下 在 98兩

또 이상의 각 조건들은 지소가 혁파되어 軍官 246명의 담당 군관을 없애고, 봄·가을에 각 1兩을 質用紙物로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1840년 이전에 지소는 이미 혁파되었으며, 각 항목에 보이는 지역과 사찰도 이미 지소의 기능을 잃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임실읍지』의 ‘公署’ 항목에서 ‘紙所仙鴨伽智新興等三寺輪回限十年擔當’이라는 기록으로 볼 때 19세기 초 지소가 혁파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인근의 주요 사찰에서 종이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4.3.3.2 紙筒通引 기록으로 본 寺刹 製紙業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1840년 이전에 紙所였던 사찰은 紙所色 항목에서 新興寺, 西耳寺, 深源寺, 山灘菴이 있었고, 『임실읍지』를 통해 仙鴨寺, 伽智寺, 新興寺가 지소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찰들의 위치를 『湖南地圖』<sup>60)</sup>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湖南地圖』內的 任實地域과 寺刹 位置

『임실읍지』 寺刹 항목에서 ‘新興寺 在縣北邊四十里, 西耳寺 在縣西邊四十里, 山灘菴 在縣西邊三十里, 深源寺 在縣東邊三十里, 仙狎寺 在白蓮山, 伽智寺

60) 『湖南地圖』, 서울대 규장각 소장.

在縣東二十五里'로 각 사찰의 위치가 확인된다. 이 외에 『임실읍지』에는 烏院寺, 上耳菴, 石門菴, 仙狎寺, 佛饗臺菴, 水會菴, 鳳臺菴, 中基寺, 葛公寺, 水落菴, 望月菴, 日出菴의 사찰이 보여지고 있으나 紙所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紙筒通引'의 항목을 통해서 임실현의 사찰제지업 여부를 확인하고, 쇠퇴하게 된 시기도 파악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仙鴨寺	}	朔白紙 12束 皮紙 4束 10張 輪回捧納矣
水落寺		庚戌 因各寺殘敗 白紙 3束 皮紙 1束 捧納矣
西耳寺		今則 永久革罷
新興寺		
葉作册 1件		年久闕失
加智寺 朔白紙 3束 皮紙 1束		以該寺 空虛減
深源寺 朔白紙 2束 4張 皮紙 1束		今則 鄉廳除役
廳舍 3間 6砵		年久頽墮故 李等內改建蓋瓦
貢生等保人 各 2名式	[	朴等內勑始矣 打簡之役 浩煩呈得 搗打軍 6名
		每名給保 6名式 以貢生下 保移給 又除洞役

종이의 收納에 대한 기록 중 선암사, 수락사, 서이사, 신흥사는 매달 초하루에 白紙 12束, 皮紙 4束 10張을 돌아가며 봉납했으며, 1790년으로 추정되는 庚戌년에 이르러 각 사찰이 잔파하여 白紙 3束, 皮紙 1束으로 봉납의 양을 줄였지만 결국 永久革罷되고 말았다.

『正祖實錄』 1793년(正祖 17) 12월 18일조의 기록을 통해 이 당시 사찰제지업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닥나무를 심는 것은 원래 승려들의 業이었으나 三南 지방의 寺刹이 모두 황폐해지고 중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림으로써 닥나무밭도 따라서 묵어버렸는데, 진실로 그 근원을 캐어보면 벌써 오랫동안 흘러온 폐단이다.<sup>61)</sup>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임실현 지역의 사찰제지업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다.

61) 『正祖實錄』 17年 12月 丁丑(條). “種楮 本是僧業 而三南寺刹 盡爲凋弊 僧徒散亡 楮田隨荒 苟究其源 流弊已久.”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필사본 『임실현중기책』을 대상으로 하여 서지적 검토와 더불어 수록된 내용 중 書冊, 製紙, 寺刹과 관련된 항목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실현중기책』은 표지의 묵서와 권수제의 기록, 즉 “道光二十年正月”을 통해서 1840년 1월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임실읍선생안』 등을 통하여 1840년에 鄭基輓이 임실현감으로 재임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둘째, 중기의 전체적인 기술체제는 房 또는 色을 큰 항목으로 두며, 하위 항목에 ‘[某姓]等內備上’과 같이 어느 현감 때 관리했던 물품인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建物, 書冊, 雜物, 田畝 등은 ‘-秩’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물품 보관 상태의 표기법으로 물품 자체가 파손되어 없어진 경우는 破無形體, 破不用, 革罷已久 등이며, 타인에 의해 분실되거나 파손된 물품은 崔山笈失, 校奴 應明 闖失, 丙子六月 爲賊見失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물품의 위치나 소장처별 표기법은 各面里播給, 官廳上, 使令廳在, 具機新興寺在, 鄉廳奉安 등으로 물품이 이동하게 되면 수량과 정확한 소장처를 밝히고 있다.

셋째, 『임실현중기책』의 향교나 각 부서별 소장 물품 중 서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교 소장본은 80종으로 유교 경전, 역사서, 교훈서, 어제서, 내사된 서책 등이 있고, 개인 소장본인 『임실읍지』와 대조해본 결과 서명과 수량이 동일한 서책은 『춘추』·『자경편』·『서진』·『사략』·『오례의』 등이다. 한편 후대에 작성된 『任實鄉案』에서 21종의 서책과 수량이 같으므로 100여년이 지난 1960년에도 향교에 서책이 보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아 소장본은 19종으로 병서, 법전, 형률서, 법의학서가 있으며, 읍지 개념의 지리서인 『운수지』도 포함되어 있다.

넷째, 戶籍色의 항목에서 총 55종의 임실현 戶口 帳籍의 기록을 통해 장적의 干支와 작성시기를 대조해 본 결과 장적은 1666년부터 1837년까지 3년마다 작성되었다. 또한 禮房, 作隊色, 都書員, 縣司戶長, 補民色의 항목을 통해 임실현에

비치되어 있던 문서들의 성격과 수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교에서 보관한 문서들은 나무상자에 담아 보관되고 있었다. 도서관의 항목에서는 토지대장과 징세장부, 關文 등 23종의 문서를 관리하였으며, 문서명에 나타난 간지를 통해 시기를 확인해 본 결과 1723년부터 1836년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8년마다 토지대장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중기에 紙所로 기록된 仙鴨·伽智·新興寺 등은 관련 사료인 『임실읍지』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各項條件의 하위항목에서 종이를 만드는 작업이 각 사찰에서 분업하여 시행했으나 1840년에는 혁파된지 이미 오래됐다는 기록에 의하여 임실의 사찰제지업은 1800년대에 이미 쇠퇴로 접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또 仙鴨寺, 水落寺, 西耳寺, 新興寺에서 종이를 捧納 해왔는데 1790년에 절이 殘敗되면서 봉납하는 양이 줄어들었고, 1840년에는 혁파되었다.

이와 같이 18세기 중반 임실현에서 작성된 『임실현중기책』을 통하여 조선후기 관아의 통치, 관리, 교육, 교화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중기에 기록된 내용 중 書冊, 製紙, 寺刹 관련 항목과 戶籍을 비롯한 문서 기록을 통해 1840년을 기점으로 임실현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타 지역 중기들의 기록을 종합하고 비교·검토하면 각 지방의 물품 관리와 전반적인 통치 형태의 파악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차이와 사회·문화·제도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 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원전]

『各道冊板目錄』(필사본).

『世宗實錄』.

『完營冊板目錄』(필사본).

『雲水誌』(필사본).

『任實郡誌』(목활자본).

『任實邑先生案』(목활자본).

『任實邑誌』(필사본).

『任實鄉案』(석판본).

『任實縣重記冊』(필사본).

『任實邑誌』(필사본).

『全羅道任實縣稅冊』(필사본).

『諸道冊板錄』(필사본).

『全羅道任實縣稅冊』(필사본).

『上耳庵寺蹟』(영인자료). 『古文研究』 10권1호. 한국고문연구회. 1997. 174-178.

#### [단행본]

강재인. 『봉건사회 해체기의 사회경제구조』. 서울: 청아출판사, 1982.

김덕진. 『朝鮮後期 經濟史研究』. 서울: 선인, 2002.

김삼기. 『조선시대 제지수공업 연구』. 서울: 민속원, 2006.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문화재청. 『韓國寺址總覽』 下.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0.

변주승. 여지도서45 『전라도』II. 전주: 흐름, 2009.

영남문화연구원. 『重記』I.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9.

국립전주박물관. 전북의 역사문화전X 『임실』. 서울: 비에이디자인, 2011.

#### [논문]

강혜영. “朝鮮朝 全州地方의 木版印刷文化考.” 『國會圖書館報』 20권 6호(1983). 47-59.

김덕진. “『光州牧重記』 解題.” 『호남문화연구』 제21집(1992). 187-193.

김병남. “全州 지역의 韓紙 발달과 현실.” 『남도민속연구』 10집(2004). 15-38.

김문경. “邑誌로 본 朝鮮後期 寺刹 製紙의 實狀.”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

- 학원. 2002.
- 김인규. “朝鮮 明宗代 星州地域 寺刹의 製紙活動.” 『진통문화논총』 제1권(2003). 87-106.
- 김 혁. “古文書用語 풀이 - 重記.” 『고문서연구』 19(2001). 157-163.
- 남권희. “慶尙道 安陰縣의 『丁卯十一月日 各項都重記』 分析.” 『嶺南學』 제21호 (2012). 203-255.
- 남권희. “韓國 出版文化史에 있어서 完板本の 위상.” 완판본과 전주의 기록문화 학술대회 발표문(2011).
- 남권희. “重記資料 分析에 의한 朝鮮時代 地方 官衙의 記錄管理.” 『社會科學』 제14집(2002). 1-43.
- 남권희. 『東興備攷』의 寺刹 기록 연구.” 『嶺南學』 제2호(2002). 97-142.
- 박원택. “朝鮮時代의 會計制度로서의 解由의 要件과 解由規則.” 『安東大學 論文集』 제8집(1986). 425-438.
- 박진철. “1693년 『重記』를 통해 본 全羅道 羅州 牧의 軍備 實態.” 『東國史學』 제46집(2009). 1-32.
- 시귀선. “古文獻에 보이는 ‘等內’의 用例에 대하여.” 『전주사학』 제4권(1996). 215-232.
- 안현주. “조선시대 羅州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2011). 1-22.
- 옥영정.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제50집(2011). 433-470.
- 옥영정. “湖南地方 木活字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2.
- 유기석. “湖南地域 典籍文化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0.
- 이광린. “李朝後半期の 寺刹製紙業.” 『歷史學報』 17·18(1962). 201-220.
- 이일영. “任實郡聖壽山 上耳庵寺蹟: 삼가 唐 일행선사의 記를 살펴보다.” 『古文研究』 10권 1호(1997). 182-187.
- 전영준. “조선전기 官撰地理志로 본 楮·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 『지방사

書誌學研究 第57輯(2014. 3)

와 지방문화』 14권 1호(2011). 47-75.

조미은. “19세기 解由文書와 重記에 관한 사례연구.” 『고문서연구』 제40호(2012). 179-212.

최양임. “朝鮮時代 韓紙 製造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1.

홍성덕, 김철배. “전주향교 완영책판(完營冊板)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古文化』 제65집(2005). 81-106.